

소액수의견적(공사) 제출안내 공고(특수조건 필독)

입찰대행안내

- 본 공고 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문경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계약체결, 선금, 부분금 및 완납금 등 대금지급, 납품서 제출 등)은 보조사업자(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이엠 대표)와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시기 전에 반드시 붙임 공고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물품 확보 및 기한 내 납품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추 정 금 액 (원)				기 타 (원)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특화작목 부산물활용 기능성식품 융복합플랫폼 구축사업 선별장 리모델링공사	90,840,000	82,581,818	8,258,182	-	-

○ 기초금액 : 금90,840,000원(금구천팔십사만원)

○ 공사유형 : 건축공사

○ 사업내용 : 건축 리모델링 공사(214.12.㎡)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위 치 :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1길 19-14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산물가공팀(☎054-550-8245)
-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고 참여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6. 07. 23.(목) 11:00
- 전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7. 21.(화) 09:00
- 전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7. 23.(목) 10:00
-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부칙[법률 제16136호] 제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호 시장진출 허용을 제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전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전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내역서, 과업 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전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전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전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전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A값)
적용 금액	-	-	-	515,145	1,843,857	-	-	2,359,002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전자 견적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붙임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방문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획지원팀☎ 054-550-8233)
- 내역서 등 :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산물가공팀☎ 054-550-8245)

2026. 07. 16.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문경시 회계 41345-11431호(2003. 12. 11)]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문경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문경시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문경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경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 조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 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경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문경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문경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인)

문경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 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상대자의 직접노무비 (부가세 포함)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내용	공종			
	하수급내용	도 급 액 : 하수급액 : 하수급율 :		
	하수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수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 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				

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됨으로 선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수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 (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 주 처 : 문경시(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대표 (인)

하수급인 : 대표 (인)

문경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